



## 한·중 전기전자분야 시험인증 상호인정 본격 논의

표준관련 비교연구, 상대국의 IECEE CB 성적서의 적극적 수용 및  
양국 시험인증기관 간의 협력 확대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CNCA)와 양국 간 전기전자분야 인증관련 상호인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증관련 상호인정 체결이란 자국 시험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를 수입국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수출을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시험이나 인증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양국은 지난 8.24(월)~25(화) 양일간 경주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기전자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를 활용한 상호인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IECEE CB: 전기전자국제표준화기구인 IEC에서 운영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시험인증 국제상호인정 체계

현재 우리 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강제인증(CCC)의 획득이 필요하나, 국내에서 제품시험을 통해 발급 받은 IECEE CB성적서가 CCC 인증과정에서는 일부 항목만 인정되어, 중국에서 다시 제품 시험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중국의 대표적인 강제 제품인증제도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20종 158개 품목이 해당 이에, 양국은 전기전자제품의 원활한 무역 촉진을 위하여, 표준관련 비교연구, 상대국의 IECEE CB 성적서의 적극적 수용 및 양국 시험인증기관 간의 협력 확대 등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전기전자제품을 포함한 양국의 강제인증품 목 전반에 걸쳐 상호인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정보교환 및 상호인정 범위 결정 → 인증제도 차이분석 → 상호인정 방법과 범위 협상 → 협정문 준비 및 서명 등의 순으로 단계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국표원은 전기전자 및 생활용품 분야의 안전을 총괄하고 있고, CNCA는 자동차 등 공산품 전반에 대해 안전관리를 하여, 향후 국내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 필요

아울러, 양국 인증제도 개편현황을 공유하고, 한·중 FTA TBT(무역기술장벽) 협력의 원활한 추진 방안 등을 협의하

였고, 특히 한국은 우리 시험인증기관의 중국 진출과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 관련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중국측의 협조를 당부하여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변영만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금번 회의에서 양측이 협의한 양국 강제인증 분야의 상호인정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조속히 중국측과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며, 향후 전기전자분야 시험인증 상호인정 협력이 진전될 경우, 우리 기업의 对중국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중 전기전자분야 시험인증 상호인정 현황

### 양국 전기전자분야 강제인증제도 비교

구분	KC인증 (한국)	CCC 인증(중국)
인증관리 방식	제품 유해도에 따라 3가지 유형 – 안전인증제도 : ①+②+③ – 안전확인제도 : ① (지정시험기관) – 공급자적합성제도 : ① (시험기관 선택 자유)	모든 품목 ①+②+③
안전관리 품목수	177 품목 (인증 46, 확인 69, 공급자 62)	105 품목 (CCC인증)

### 우리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 현재 우리 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강제인증(CCC)의 획득이 필요하나, 국내에서 제품시험을 통해 발급 받은 IECEE CB성적서가 CCC 인증과정에서는 일부 항목만 인정되어, 중국에서 다시 시험을 받아야 함
- \* 중국에 제품 샘플 송부 등 시험인증관련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소요

## 한–중 전기전자제품분야 시험인증 상호인정 추진방향

- 양국의 시험인정체계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체계를 활용, 시험인증기관 간 MoU에 의한 상호인정 중심으로 추진
  - \* 시험인증기관 간 MoU에 의한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방법은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상호인정에 많이 활용되어 온 방법임
- 양국 시험인증기관들이 상호인정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선행적으로 양국 정부 간 합의 추진

【 문 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 (043-870-5541)